

문서번호	공사감독1처-1573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16.03.17.
공개여부	공개

★팀장	공사감독1처장	시설안전본부장		
협 조	공사감독2처장			
	공사감독3처장			

---

## 2016년 공사감독처 지역순환배치제 시행계획

---

2016. 3

# 2016년 공사감독처 지역순환배치제 시행계획

「2015년 공사감독 분야 부조리근절 특별 종합대책 이사장 보고(10.19)」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처내 근무자에 대한 지역순환배치제 시행으로 발주청(시공사)와의 면식관계를 끊어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\* 이사장 직무대행 업무보고(3.15)

## □ 추진근거

- '15.10.19 공사감독 분야 부조리 특별 종합대책 이사장 보고
- '16. 3. 8 「공정·형평성 제고를 위한 승진·전보 개선방안」 이사장 방침

## □ 문제점(현안사항)

- 도심지공사 특성상 시공사의 지역적 독점권, 발주청의 부당한 업무관여 등이 상존하고 있어 발주청(시공사)와 공사감독간 면식관계 차단 필요
- 금년 4.1자로 직원 정기 전보가 있을 예정이나 공사감독처내 특정 직종(토목·조경)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공사감독 부서에 집중 배치되어 다른 부서와 전보매칭의 구조적 한계로 순환보직에 어려움

\* 정기 전보대상 현황(파견자, 기술행정 업무수행자 제외)

(3.14 기준)

구 분	감독인원(A)	전보 대상자 현황				전보대상자 비율 (C=B/A)
		계(B)	공사감독1처	공사감독2처	공사감독3처	
토 목	55명	21명	4명	17명	-	38%
조 경	22명	-	-	-	14명	64%

## □ 개선방안 : 공사감독처 지역순환배치제 시행

- 시행방식 : 각 부서내 직원 내부전보 방식  
(단, 공사감독부서간 매칭 가능한 직원이 있을 경우 공단 정기 전보시 인사조치 가능)
- 시행기준 : 모든 감독직원 팀(지역) 재배치 \* 향후 지역순환배치제 시행주기 : 2년
- 시 행 일 : 방침일로부터 즉시

## □ 행정사항

- 「공사감독처 지역순환배치제 시행계획」 부서 통보(공사감독1처→2·3처) : ~3.15(화)
- 공사감독 부서간 직원 전·출입 계획 의견 요청(공사감독2·3처→1처) : ~3.17(금). 끝.